

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(서면-2025-자본거래-3489, 2026. 6. 1.)

I. 취지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45 조의 5 제 1 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되는데, 각 호에 열거된 다섯 가지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유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 유형별로 합산하여 1 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.

II. 사실관계 및 질의의 요지

(사실관계)

- ✓ 법인 A 는 'xx 년 설립된 법인이며, 대표자 갑은 보유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 B 를 신설함.
- ✓ 갑은 법인 B 의 주식을 법인 A 에 무상증여하고, 법인 B 의 이익을 법인 A 에 초과배당할 계획임.

(질의의 요지)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45 조의 5(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) 적용 시과세기준과 관련하여,

- ① 자산수증이익(무상증여)과 초과배당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지, 아니면 각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1 억원을 초과하여야 하는지 여부
- ② 2025 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본거래(제 3 호의 2)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 억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

III. 회신 요지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45 조의 5 제 1 항을 적용할 때, 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일부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별로 합산하여 1 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.

IV. NOTE

가. 쟁점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 45 조의 5 제 1 항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① 재산·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, ②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받는 경우, ③ 현저히 높은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, ④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, ⑤ 이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해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5 제 5 항은 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,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(예컨대, 무상증여와 초과배당)에서 발생한 이익을 합산하여 1 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, 아니면 각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도로 1 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입니다.

나. 과세기준 요건의 분석

1) 1 억원 과세기준의 의미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34 조의 5 제 5 항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"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"로 한정하고 있습니다. 이는 소액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배제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최저한도 규정입니다.

2) 거래 유형별 구분 합산 원칙

기존 해석사례(서면상속증여-2262, 2018.08.14.)에 따르면, 1 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은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집니다. 즉, 무상증여(제 1 호)에 따른 이익과 초과배당(제 3 호의 2 또는 제 4 호)에 따른 이익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1 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.

다만, 동일한 거래 유형 내에서 그 거래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반복된 경우에는 해당 이익을 합산하여 1 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합니다.

3) 2025 년 개정으로 신설된 자본거래(제 3 호의 2)에 대한 적용

2025 년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 3 호의 2(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)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 34 조의 5 제 5 항은 거래 유형을 불문하고 "증여의제이익이 1 억원 이상인 경우"로 과세를 한정하고 있으므로,

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의 경우에도 해당 거래 유형에 따른 이익이 1억원 이상인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

다. 의의

본 해석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과세에 있어 1억원 과세기준의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한 것으로, 서로 다른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임의로 합산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방지하고, 각 거래 유형별로 독립적인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.

[관련 법령]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】

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(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"특정법인"이라 한다)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.

1.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
 2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·제공받는 것
 3.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·제공하는 것
- 3의2. 불균등 감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
② ~ ③ (생략)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【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】

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(이하 이 조에서 "지배주주 등"이라 한다)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.

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【증여세 과세특례】

- ② 제31조제1항제2호, 제35조,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, 제41조의4,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(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)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.